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51호 2020. 8. 3(월)

고 시

○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고시 제 2020-217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3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	불	임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2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<붙임>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18-7	2020.08.3.	건물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18-8	2020.08.3.	건물멸실
3	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18-7	2020.08.3.	건물멸실
4	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18-7	2020.08.3.	건물멸실
5	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18-7	2020.08.3.	건물멸실